

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기획예산과-101180 | 주무관 | 법무팀장 | 기획예산과장 | 기획재정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|
| 결재일자 | 2015. 11. 20. | 송수연 | 이기호 | 조상연 | 이상형 | 하철승 | 11/20 박경수 |
| 공개여부 | 부분공개 | 협 조 | | | | | |
| 보도여부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

2015. 11. 19.

강 북 구
(기획예산과)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개정계획

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고 입법예고문에 자치법규안이 게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I 개정 이유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
 -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-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 - 입법예고문에 자치법규안이 게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하고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.

II 주요 내용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
 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방법 중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함(안 제3조의2)

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용어 수정(안 제34조)
- 「법제업무 운영 규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시 명시해야하는 법령안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입법예고문에 추가함(안 별지 제1호서식)
-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개정함(안 별지 제3호, 제5호, 제8호서식)

Ⅲ 관 계 법 령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
-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3조
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5조제1항 제3항, 제20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2조1항, 제13조제2항, 제16조제3항
- 「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

Ⅳ 참 고 사 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Ⅴ 추 진 일 정

- 2015. 11. 20. ~ 2015. 12. 10. : 입법예고
- 2015. 12월 중 : 조례규칙심의회 심의
- 2016. 1월 중 : 의회 안건 상정

- 붙 임 :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